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취소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한정〉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801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취소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로 한정	2
2. 적용례 등(안 부칙)	6
【참고자료 1】 외국교육기관 현황	8
【참고자료 2】 정비대상 목록	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10. 21.
3. 회부연월일 : 2024. 10.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취소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로 한정

개정안은 개교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않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u>외국교육기관이</u> 개교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략)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외국교육기관이</u> <u>정당한 사유 없이</u>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¹⁾”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²⁾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³⁾으로 정의하면서⁴⁾, 외국학교법인⁵⁾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기준을 갖춰 행정기구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할지역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⁶⁾,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채드워스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이상 유치·초·중등), 한국뉴욕주립대학교 SBU,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이상 고등)가 있음.

참고자료 1 외국교육기관 현황 참조

※ 제주국제학교[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노스런던컬리지게이트스쿨 제주(NLCS jeju), 한국국제학교(KIS High School), 브랜섬홀 아시아(BHA)]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권자는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한편, 정부는 영업의 취소사유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전염병 확산과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 업무 수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곧바로 영업 취소를 하는 경우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허가·등록·지정 등의 취소사유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완화하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바⁸⁾,

허가·등록 등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법령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제 발굴을 추진하였고(~2024. 5.), 소관부처 협의를 실시하였으며(2024. 6. 10. ~ 7. 18.) 총 37건(법률 31건, 대통령령 3건, 부령 3건)의 정비과제를 확정하였으며⁹⁾, 정부는 동 정비 방안에 따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7) 교육부에 따르면 동 사유로 설립승인이 취소된 사례는 없음.

8) (교육부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국정과제 1-3) 관련

9) 참고자료 2 정비대상 목록 참조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이 전염병(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같이 외부적 요인 등으로 개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외국학교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의 취소요건으로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행기관 지정 또는 측량업 등록 후 1년 이상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지정 취소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10)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4제1항·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적용례 등(안 부칙)

개정안의 부칙으로 적용례를 두어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적용례는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¹¹⁾,

동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전에 개교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여 설립승인 취소 대상 외국교육기관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¹²⁾에서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11)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847p

12)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는 상기 언급한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신법의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7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버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1

외국교육기관 현황(2024.9.1. 기준)

학교급	외국교육기관		현황	지역
초·중등 (초·중·고)	대구 국제 학교		- 규모 : 총정원 680명 (유, 초, 중, 고) - 본교 : 미국 Lee Academy - '10년 4월 설립승인, '10년 8월 개교	대구
	채드윅송도 국제 학교		- 규모 : 총정원 2,080명 (유, 초, 중, 고) - 본교 : 미국 Chadwick School - '10년 6월 설립승인, '10년 9월 개교	인천 (송도)
	칼빈매니토바 국제 학교		- 규모 : 총정원 1,312명 (유, 초, 중, 고) - 본교 : 캐나다 Calvin Christian School - '22년 8월 조건부 설립승인, '23년 9월 개교	인천 (송도)
고등 (대학)	한국 뉴욕주립 대 학교	SBU (스토니 브룩대)	- 규모 : 학부과정 1,040명, 석·박사과정 167명 - 개설학과 : (학사) 컴퓨터과학, 기술경영학, 기계공학, 응용수학통계학, 경영학, 전자정보공학 (석·박사) 기계공학, 기술경영학, 응용수학통계학, 컴퓨터과학 - 본교 :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11년 7월 설립승인, '12년 3월 개교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FIT (패션 기술대)	- 규모 : 준학사과정 210명 - 개설학과 : 패션디자인학과, 패션경영학과 - 본교 : 미국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 '17년 3월 설립승인, '17년 9월 개교	
	한국조지메이슨 대 학교		- 규모 : 학부과정 1,160명, 석사 과정 40명 - 개설학과 : (학사) 경영학, 경제학, 국제학, 분쟁분석, 해결학, 데이터과학, 컴퓨터게임디자인학, (석사) 데이터과학, 법학 - 본교 :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 '13년 8월 설립승인, '14년 3월 개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 규모 : 학부과정 900명 - 개설학과 : 식품공학, 환경공학, 분자생명공학 - 본교 : 벨기에 Ghent University - '13년 10월 설립승인, '14년 9월 개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 규모 : 학부과정 1,084명, 석사과정 16명 - 개설학과 : (학사) 게임학과, 심리학, 신문방송학, 영화영상학, 정보시스템학, 회계학, 도시계획학, 전기컴퓨터공학, (석사) 신문방송학 - 본교 : 미국 University of Utah - '14년 2월 설립승인, '14년 9월 개교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정비대상 목록

(유형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취소

○ 법률 : 25개 법률, 29개 과제

	소관 부처	정비대상 법령		취소사유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명령 가능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3호	· 클라우드컴퓨팅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4	교육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 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승인 취소 가능
5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 속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제조·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6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록 취소 가능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5호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취소 가능
8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장 건축허가의 취소 등 가능
9		식물방역법	제41조 제2항 제2호	·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가능
10		초지법	제12조 제1항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6제1항 제5호	· 초지조성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1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호	· 장애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3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3호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4		전기공사업법	제21조 제2호	· 지정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지정 취소 가능
15			제28조 제1항 제7호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1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제2항 제3호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17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1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의2제2 호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19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0			제26조의 5제1항 제4호	·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1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22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 취소 가능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4			제17조 제5호	·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5		수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6			제63조 제1항 제2호	·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취소 가능

27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의2제2 항 제2호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 의6제1 항 제5호	·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등 가능
29		환경보건법	제23조 의2제5 항 제4호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등 가능

○ 대통령령 : 3개 대통령령, 3개 과제

	소관 부처	정비대상 법령		취소사유
1	산업통상 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 후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2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측정·분석기관이 측정·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 취소 가능

○ 부령 : 2개 부령, 3개 과제

	소관 부처	정비대상 법령		취소사유
1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2			제16조 제1항 제4호	·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3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유형2) 과도하게 짧은 실적 미비기간 연장 (1개월 → 6개월)

○ 법률 : 2개 법률, 2개 과제

	소관 부처	정비대상 법령		취소사유
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2호	·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의14 제3호	·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